

##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0-12호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의성군의회 회의장

##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 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보험 가입대상, 보상범위와 한도,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의 청구·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보험금 지급, 지급제외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7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국내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가입으로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국내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함
- 보험료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sup>1)</sup>에 의뢰하여 산정하였음
-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장내용과 보상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음
  - 보장내용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포함된 23개 보장항목 중 경상북도에서 도민 일괄로 가입한 1개 항목<sup>2)</sup>을 제외한 22개 항목에 모두 가입
  - 보상한도액 : 경상북도 내 안전보험에 가입된 14개 시군 중 시와 울릉군을 제외한 6개 군<sup>3)</sup>의 보장항목별 한도액의 평균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인구수는 2020. 5. 31일 기준, 52,760명으로 하였음

1) 지방재정의 발전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2) 야생동물피해보험

3) 청도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울진군

### 3. 비용추계의 결과

◦ 2021년~2025년까지 약 414,140천원 지출 예상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br>(2021) | 2차년도<br>(2022) | 3차년도<br>(2023) | 4차년도<br>(2024) | 5차년도<br>(2025) | 합계       |
|-------------|---------------|----------------|----------------|----------------|----------------|----------------|----------|
| 세입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세출          | ◦ 군민안전<br>보험료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414,140  |
|             | 소계(b)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414,140  |
| □ 총 비용(a-b) |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414,140 |

### 4. 재원조달 방안

| 구분 \ 연도 |      | 1차년도<br>(2021) | 2차년도<br>(2022) | 3차년도<br>(2023) | 4차년도<br>(2024) | 5차년도<br>(2025) | 합계      |
|---------|------|----------------|----------------|----------------|----------------|----------------|---------|
| 국비      |      | -              | -              | -              | -              | -              | -       |
| 도비      |      | -              | -              | -              | -              | -              | -       |
| 군비      | 일반회계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414,140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 민간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합계      |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82,828         | 414,140 |

### 5. 부대의견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414,140천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보장내용, 보상한도액, 가입당시 인구수 등에 따라 실제 연도별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 안전건설과 / 지방시설사무관 / 김주영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21년 ~ 2025년 : 매년 주민안전보험 가입보험료 예상액

# 시민안전공제 공 제 회 비 안 내 서

|       |           |
|-------|-----------|
| 회 원 명 | 경북 의성군    |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

|      |        |                               |        |        |       |
|------|--------|-------------------------------|--------|--------|-------|
| 전체인원 | 52,760 | ※ 2020년도 회원 제공 인구기준, 등록외국인 포함 |        |        |       |
| 가입인원 | 15세 이상 | 15세 미만                        | 13~18세 | 12세 이하 | 8세 이하 |
|      | 49,692 | 3,068                         | 1,440  | 2,637  | 1,798 |

| 담보내역          |                      | 적용인원   | 가입금액              |
|---------------|----------------------|--------|-------------------|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49,692 | 14,000,000        |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49,692 | 14,000,000        |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52,760 | 14,000,000        |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49,692 | 13,000,000        |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52,760 | 13,000,000        |
| (6)           | 병소나 무보험자 상해사망        | 49,692 | 12,000,000        |
| (7)           | 병소나 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      | 52,760 | 13,000,000        |
| (8)           | 강도 상해사망              | 49,692 | 11,000,000        |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52,760 | 14,000,000        |
| (10)          | 익사사고 사망              | 49,692 | 14,000,000        |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52,760 | 12,000,000        |
| (12)          | 청소년유괴·납치 인질일당        | 1,440  | 100,000           |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2,637  | 14,000,000        |
| (14)          | 미아찾기 지원금             | 1,798  | 1,000,000         |
| (15)          | 야생동물피해보상             | -      | -                 |
| (16)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52,760 | 15,000,000        |
| (17)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52,760 | 11,000,000        |
| (18)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52,760 | 14,000,000        |
| (19)          | 강력범죄피해 보상금           | 52,760 | 13,000,000        |
| (2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49,692 | 14,000,000        |
| (21)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52,760 | 14,000,000        |
| (22)          | 가스사고 상해사망            | 49,692 | 14,000,000        |
| (23)          | 가스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52,760 | 14,000,000        |
| <b>최종공제회비</b> |                      |        | <b>82,828,510</b> |

※ 실제 가입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제회비를 안내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 2020. 5. 31일 의성군 인구수 기준, 야생동물 피해 보험은 도에서 일괄 가입

2. [참고]경북 6개 군 군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및 한도액 평균 (2020. 5.기준)  
(단위 : 천원, 만명)

| 구 분                   |        | 시군명            |                |                |                |                |        |        |
|-----------------------|--------|----------------|----------------|----------------|----------------|----------------|--------|--------|
|                       |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예천군            | 울진군    | 의성군    |
| 현황                    | 보험가입금액 | 60,000         | 33,000         | 58,000         | 30,000         | 30,000         | 45,000 | 82,828 |
|                       | 인구수    | 2.5            | 1.7            | 3.7            | 4.3            | 5.5            | 4.9    | 5.2    |
| 보장내용 (항목수)            |        | 22             | 21             | 22             | 14             | 14             | 10     | 22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 15,000         | 15,000         | 20,000         | 15,000         | 10,000         | 10,000 | 14,000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 15,000         | 15,000         | 20,000         | 15,000         | 10,000         | 10,000 | 14,000 |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 10,000         | 15,000         | 20,000         | 15,000         | 5,000          | 10,000 | 14,000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 10,000         | 15,000         | 15,000         | 15,000         | 10,000         | 10,000 | 13,000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 10,000         | 15,000         | 15,000         | 15,000         | 5,000          | 10,000 | 13,000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 10,000         | 15,000         | 10,000         | 15,000         | -              | -      | 12,000 |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 10,000         | 15,000         | 10,000         | 15,000         | -              | 5,000  | 13,000 |
| 강도 상해사망               |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0,000         | 10,000 | 11,000 |
| 강도 상해후유장애             |        | 10,000         | 15,000         | 15,000         | 15,000         | 5,000          | 10,000 | 14,000 |
| 익사사고사망                |        | 15,000         | 18,000         | 15,000         | 15,000         | -              | 5,000  | 14,000 |
| 의료사고 법률지원             |        | 10,000         | 15,000         | 15,000         | 15,000         | 5,000          | -      | 12,000 |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 100<br>(90일한도) | 100<br>(90일한도) | 100<br>(90일한도) | 100<br>(90일한도) | 100<br>(90일한도) | -      | 100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        | 15,000         | 15,000         | 20,000         | 10,000         | 10,000         | 10,000 | 14,000 |
| 미아 찾기 지원금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1,000  |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 15,000         | -              | 15,000         | -              | -              | -      | 15,000 |
| 성폭력범죄 보상금             |        | 10,000         | 15,000         | 12,000         | -              | 5,000          | -      | 11,000 |
| 성폭력상해 보상금             |        | 10,000         | 15,000         | 15,000         | -              | -              | -      | 14,000 |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 10,000         | 15,000         | 10,000         | -              | -              | -      | 13,000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 15,000         | 18,000         | 15,000         | -              | 5,000          | -      | 14,000 |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 15,000         | 18,000         | 15,000         | -              | 5,000          | -      | 14,000 |
| 가스상해 위험사망             |        | 10,000         | 15,000         | 15,000         | -              | -              | -      | 14,000 |
| 가스 상해후유장애             |        | 10,000         | 15,000         | 15,000         | -              | -              | -      | 14,000 |

## 【 관 계 법 령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